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KAU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0.3.9		16		
2	2020.11.30		17		
3	2021.12.13		18		
4	2023.12.18		19		
5	2024.7.29		20		
6	2025.8.13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전문 개정 2021.12.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10조 제12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학기제 종류) ① 현장실습학기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는 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은 제7조제2항의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현장실습은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 ①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2. 학부(과) 개설 전공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원
3.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4.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신청 및 접수관리
5.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관리
6. 참여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7. 현장실습 운영자료 관리
8. 현장실습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9.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10.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제 2 장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제5조(편성) 현장실습은 4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수) ① 이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을 합하여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국가재난 시 대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을 이수중인 학생이 국가재난, 실습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기관의 동의와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기관 및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장기 현장실습은 2회 이내, 단기 현장실습은 2회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의 개설) ① 현장실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부(과)에서 개설한다.

②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
5.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은 학기기간(시작일과 종료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학기기간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격)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계절제는 휴학생 신청 가능). 단,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계절제 현장실습신청 불가
2. 편입생의 경우 최소 1학기 성적 완료된 자
3.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5. 본조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및 연계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는 총장 승인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29.>

제9조(신청 및 선발) ①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학부(과)장은 우리 대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

③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센터장 및 해당 학부(과)장, 교과목 담당교수가 현장실습기관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시간 중에는 현장실습 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③ 현장실습은 본교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한다.

제11조(실습지도) ① 센터장 및 해당 학부(과)장 혹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습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중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이행여부, 운영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와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과목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실습생의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기관의 출근부 및 기업평가표, 순회지도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 ②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일반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③ 현장실습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이수 NP(No Pass)로 평가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④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현장실습 제외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대학과 무관하게 현장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실습한 경우
2.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3. 학부(과)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 3 장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제14조(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3.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제15조(협약사항) ①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실습수당 및 후생복지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별지 서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6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 지급
2.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 주체(실습생, 실습기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실습지원비 결정

제 4 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17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현장실습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재택 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 지속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 5 장 실습생의 의무

제19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학부(과)로 제출한다.
2. 우리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규정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 조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6 장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정책 심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 장 보칙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운영부서 세부 지침, 실

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내규 제정일 이전 현장실습은 기존 인턴십 관리지침에 따른다.
3. (양식) 현장실습 관련 제반 양식은 본 내규의 붙임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수정사용 가능함.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명칭 변경) 본 규정의 명칭을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내규’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변경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4조 개정사항 중 주관부서 명칭변경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개정 2025.8.13.>

현장실습구분	개설주체	편성 상세				이수구분
		과정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요건	
전공현장실습	각학부(과)	학기제	학과(전공) 장기현장실습	15	12주(480시간)이상	전공선택
		계절제	학과(전공) 단기현장실습 1	3	4주(160시간)이상	
			학과(전공) 단기현장실습 2	3	4주(160시간)이상	
일반현장실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기제	일반 장기현장실습	15	12주(480시간)이상	일반선택
		계절제	일반 단기현장실습 1	3	4주(160시간)이상	
			일반 단기현장실습 2	3	4주(160시간)이상	

1. 실습기간 1주 단위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2. 학과(전공)* : 전공현장실습명의 학과(전공)명은 학부(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 : 물류장기현장실습 / 항공우주기계장기현장실습 / 항공재료단기현장실습 등) <개정 2021.12.13.>

[별표 2] 국가재난 시 대체교과목 편성표 <신설 2021.12.13.><개정 2025.8.13.>

현장 실습 구분	개설 주체	편성 상세			이수 구분
		과정	교과목명	실습기간 별 부여학점	
전공 현장 실습	각 학부(과)	학기제	학과(전공) 장기 일경험학습 1	5분의2 이상(6학점)	전공 선택
			학과(전공) 장기 일경험학습 2	5분의3 이상(9학점)	
			학과(전공) 장기 일경험학습 3	5분의4 이상(15학점)	
		계절제	학과(전공) 단기 일경험학습 1	5분의4 이상(3학점)	
			학과(전공) 단기 일경험학습 2	5분의4 이상(3학점)	
일반 현장 실습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학기제	일반 장기 일경험학습 1	5분의2 이상(6학점)	일반 선택
			일반 장기 일경험학습 2	5분의3 이상(9학점)	
			일반 장기 일경험학습 3	5분의4 이상(15학점)	
		계절제	일반 단기 일경험학습 1	5분의4 이상(3학점)	
			일반 단기 일경험학습 2	5분의4 이상(3학점)	

1. 재택실습 기간도 실습기간에 포함한다.